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재정부 발표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 대상 설문조사-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rporate Tax Law in Alignment with the Full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Korea

장지경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Ji-Kyung Jang(jkjangcta@pusan.ac.kr)

요약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 중심어 : | 국제회계기준 | 법인세법 | 세무조정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ossible effects on the tax accounting practices stemming from adopting the IFRS in financial reporting process. It also seeks for policy implications to help alleviate practical conflicts likely to arise from th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existing tax law and the tax related IFRS provis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ajority opinion is opposed to the fair value based revaluation of property assets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immediate recogni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gains/losses. It favors the existing provision on asset securitization which adopts sales transaction view. Secondly, most of the respondents oppose the proposed amendments which allows dual classification of lease contracts on the ground. Third, functional currency appears acceptable on a conceptual level, even though a deep concern is expressed regarding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computing taxable income using financial statements translated on the basis of functional currency on a practical viewpoint. Fourth, many respondents support the existing convention of recognizing depreciation expenses for taxation purposes and are in favor of the separation of accounting and tax books on a long-term basis. Fifth, the majority opinion approves the maintenance of existing tax reconciliation system and the recognition of expenses related with the doubtful accounts on reporting basis. Finally, a concern is raised with regard to the added burden of practical job loads needed to comply with the proposed amendments.

■ keyword :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Corporate Tax Law | Tax Reconciliation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7년 3월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의하면 2009년부터 희망기업에 한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조기적용을 허용하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가 의무화된다.¹⁾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의 기준체계, 공정가치평가 등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중요한 차이를 보여 회계기준의 단일화 과정을 수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지 않은 현행 과세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는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당기순이익에서 조세정책목적 또는 공평과세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각 세법에서 별도의 세무회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동일한 사항 또는 세무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9]. 즉, 세무회계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를 존중하므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대대적인 회계기준의 변화는 향후 세무조정과정과 과세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²⁾

현재 국내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와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

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목적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세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회계기준에 기초한 이익에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현행 과세시스템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9][5]. 이처럼 세법 개정의 방향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다.³⁾ 이렇듯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가 신중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한 세수 증가가 예견되는 가운데 기업과 세무전문가들이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의 세법 개정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⁴⁾

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의 개정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한 일부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를 위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후 재정부는 조기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법 개정방안을 미리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3) 2009년 초부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방향에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내에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까지 활동 결과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2010. 6. 30. 공청회를 통해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다.

4) 우리나라 세법은 수익과 비용 중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감가상각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은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중시하므로 지금보다는 상각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 이 때 세법은 기업회계에 따라 결산조정사항으로 비용에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현행 세법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009년에는 KT&G, 풀무원 홀딩스 등의 14개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였고, 2010년에는 삼성, LG계열사 등 30개사가 조기적용할 예정이다.
2) 국제회계기준 제20조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으나, 전면도입을 1년 채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혼란을 잠식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과의 마찰을 미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세법 개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상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세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법인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실무가의 의견을 검토함으로써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세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개정 방향에 대한 세무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V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한 상태이며 아직 의무적용이 실행되지 이전이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세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영한(2007)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법상 기업회계준용 규정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시적 차이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국제회계기준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수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그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문철 외(2008)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각 항목별로 검토하였다. 그는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법에서 기업회계 준중의 원칙을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재환 외(2009)는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과세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과세시스템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통점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회계에 의존적인 과세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할 경우 조세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며, 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개정에 대응하여 계속적으로 세법을 개정·보완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남령(2009)은 유럽연합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2005년~2007년 기간동안 조세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회계 세무 간에 일치율을 요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유효법인세율이 약간 증가한 반면 국가간 유효법인세율 분산은 감소함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단일화 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국가간 보고격차를 줄여주었다고 평가하며, 공동의 세무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현걸 외(2010)는 국제회계기준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항목별로 공정가치의 평가가 법인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내선행연구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세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술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검토한 세무적 영향 및 개정 방향을 논의함에 덧붙여 이에 대한 세무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세법적용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법 개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영향

본 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법인세법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위해, 먼저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및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 때, 국제회계기준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요 개정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은 2009년부터 희망기업에 한해 선택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하도록 하는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은 일괄적으로 도입되며,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하는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은 기업회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⁵⁾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칭함)의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⁶⁾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공정가치⁷⁾ 평가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부채를 역사적 원가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⁸⁾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을 제시 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자가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 함을 허용하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기준체계이다. 이에 반해,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한 회계처리를 허용 또는 규제하기 위해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규칙 중심(rule-based)의 회계 기준이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여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자료가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공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개별 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보고서에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비단 기업회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를 준용하고 있는 세무회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한

5) 2005년 7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STX Pan Ocean은 2004년 재무제표를 국내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 결과, 동 기업의 자기자본은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404mil USD에서 364mil USD로 감소하였으며(약10%), 순이익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184mil USD에서 163mil USD로 감소하였다(약 11%)(주인기·김지홍·장명·오명진·하미혜, 2006).

6)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2007. 3. 15. 및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기획재정부. 2010. 6. 30.
7)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8)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모든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제평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세무실무가들의 의견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주요 개정항목에 대해 현행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를 요약한 것이다.⁹⁾

표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 자산의 평가	역사적 원가 중심	공정가치 평가 확대
2. 자산유동화 분류	일률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	실질에 따라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
3. 예약매출 수익인식	공사진행률에 따라 인식	인도시점에 인식
4. 기능통화	개념 없음	개념 도입
5.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 손익인식 허용	좌 동
6. 리스 분류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구체적 분류기준 제시	리스 분류의 원칙만 제시
7. 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 의무적 재검토 규정 없음	매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적정성 재검토
8. 대손충당금	추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객관적인 대손사유 발생 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2.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상 문제점

2.1 자산·부채의 평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산·부채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⁰⁾ 자산의 재평가 등으로 인한 평가차익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법인세법 제 18조 1항).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현행 법인세법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자산·부채의 평가에 공정가치 회계가 적용되면 평가방식에 따라 실질이 동일한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가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2.2 자산유동화 분류

현행 법인세법은 자산유동화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각거래로 보는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실질에 따라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대부분의 자산유동화가 차입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¹¹⁾ 만약 현행 법인세법이 유지될 경우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3 예약매출 수익인식

현재 법인세법은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의 인도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설진행률에 따라 익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업이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69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상장기업은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비상장기업은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장·비상장 기업간에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기능통화

기능통화라 함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하며, 여기서 주된 경제 환경이라 함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외화환산에 있어서 기능통화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기능통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제회계기준 제21호).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원화로 작성된 재무제표

9) 2010. 6월. 기획재정부,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10) 법인세법 제 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 이하 생략.

11) 매각거래로 볼 경우 매각 시점에 손익이 전부 인식되지만, 차입거래의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손익이 인식되므로 손익금의 귀속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만을 인정하고 있다.¹²⁾ 현행 법인세법이 유지될 경우, 세법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¹³⁾

2.5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국제회계기준은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해서만 환산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 뿐만 아니라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환산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의 법인세법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2008년 세법의 개정으로 현재의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모든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을 인식)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화환산손익이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겠으나(법인세법 제22조 및 제42조 1항), 주된 개정원인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수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과세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가 유지될 경우, 외화자산 환산손익 관련 회계와 세법의 목적 차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무조정 부담을 안게 된다.

2.6 리스분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금융리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금융리스로 분류하기 위해 제시한 조건¹⁴⁾과 유사하다.

12) 다만, 해외사업장에 현행환율법 적용시 현지 통화를 기능통화로 보는 효과가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 ...4【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환환산기준 등】 참조).

13)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제법인-1069, 2009.12.11)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법인이 2009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는 기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함)이다.

1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 19호).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상당부분”이나 “대부분”과 같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한 분류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실무상 금융리스분류와 관련된 주관적 판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함께 20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상장사 및 금융회사와 비상장기업간의 기업회계가 이원화되어 리스 분류에 대한 상이한 회계처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국제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 동종 기업은 동일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에 감가상각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 이에 반해,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법정화 되어 있으며, 신고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⁵⁾ 또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 결산조정에 한하여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늘어나거나 잔존가액이 커지는 경우, 또는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어 장

(2)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영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3)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3)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제이자로료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1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합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만 가능하며, 내용연수의 변경은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감가상각방법 재변경은 3년간 금지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21조).

부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의 내용연수는 실제의 내용연수라기 보다는 감가상각을 위한 기준내용연수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시 내용연수의 증가로 인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¹⁶⁾

2.8 대손충당금

국제회계기준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손실(incurred loss)기준 대손충당금적립기준¹⁷⁾에 따라 이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¹⁸⁾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을 결산조정항목으로 보아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무상 범위¹⁹⁾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34조).²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이 채택한 발생손실모형 및 예상손실모형과 같은 추정에 의한 비용의 인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대손충당금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세

무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1.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상 문제점 해결방안

1.1 자산·부채의 평가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실질의 반영을 중요시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 공정가치 회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미실현손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세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²¹⁾에 의해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므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정가치 평가액을 세법이 수용하게 되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커지고, 미실현손익의 과세로 인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은 손익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법인세법 규정을 유지한다면 미실현손익으로 인한 위의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또한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여 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상의 자산·부채장부와 세법상의 자산·부채장부를 별도로 유지할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문제, 손상차손의 허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실현손익의 반영 이후 세무조정사항이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손 및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정에 의해 평가차손 및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그러나 평가차손 및 손상차손이 계상된 장부상 자산가액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

16) 박재환·정도진(2009)은 감가상각의 비중이 높은 항공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내용연수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이 상당히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대다수 기업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7)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총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미래자산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50%) 총당부채로 인식하고, 회박할 경우에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으며, 회박하진 않으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18)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예상되는 손실(expected loss)을 추정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발생손실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이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금융기관의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될 경우 대손충당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 이 때, 세무상 범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채권잔액)의 100분의 1(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2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생략)...(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21)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과약한다는 기준이다(법인세법 제40조).

회계상 감가상각비도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자산가액에 변화가 없는 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비해 그만큼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손금산입액의 감소로 인해 법인세법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즉시상각의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²²⁾을 이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평가차손 등의 금액을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다면, 해당 금액은 자산가액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감가상각 처리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한편, 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자산가액이 증가하게 되며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초과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즉, 기업회계에서 공평가치로 평가하였을 경우와 세법에서 원가법을 적용한 경우에 있어 세부담은 다르지 않게 된다.²³⁾ 종합하면, 법인세법의 기본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평가치와 관련한 평가차익을 현행 법인세법과 같이 인정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보완하여 이로 인한 차후의 세무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자산유동화 분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기업은 보유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할 경우 실질에 따라 매각 혹은 차입거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매각거래로 분류되면 유동화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처분손실로 인식되어 양도시 일시에 손금산입 되지만,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 이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되어 차입기간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자산유동화 분류시 일괄적으로 매각거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자의적 분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짐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법인세 부담액의 기간 불일치 현상이 심각해지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재정부는 자산유동화 분류에 대한 개정안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매각거래로 분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실질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분류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방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경우와 반대로 기업회계와의 일치를 통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기업의 자의적 분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3 예약매출 수익인식

예약매출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이원적 회계체제로 인해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 기간별로 상이한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의 대응 방안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여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거나, 혹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완료 시점에 예약매출의 수익을 인식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여 건설진행률에 따라 예약매출의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발생하나 비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은 손익변동성이 큰 데 반해, 건설진행률은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분할하여 연도별로 손익을 인식하므로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작아 세수의 안정성이 유지되므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더욱 적합하다 하겠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을 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회계처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²⁴⁾ 재정부 역시 예약매출의 수익인식과 관련한 개정

22)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삼각범위액을 계산한다...(생략)...(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제】).

23) 즉시상각의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김문철·이준규(2008), 심태섭(2009)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다.

24)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특징에 대한 조사결과, '쉽고 간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한, 세법이나 세무회계와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작성 당사자인 비상장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세법과의 일치를 통하여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김경호 외,2009)

안으로 현행 법인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인도기준에 따라 예약매출의 수익을 인식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이원화된 기업회계를 모두 수용하여 상장기업에는 인도 기준을 비상장기업에는 건설진행률 기준을 적용하여 세무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동일 경제행위에 대해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므로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1.4 기능통화

현재 현행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은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원화 외의 통화에 의한 재무제표 기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능통화를 도입하여 장부를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글로벌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원화 이외의 통화를 주요 영업활동의 통화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세법상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한 바가 있어, 우리나라도 법인세법상 기능통화 개념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 역시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하는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기업이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였다.²⁵⁾ 첫째,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즉, 기능통화를 사용한 기업은 과세소득의 산출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기능통화로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액은 평균환율 혹은 기말환율로 환산하여 해당 국가의 표시통화로 표시하고 납부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이미 기능통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법상 한도계산이 필요한 금액의 경우, 표시통화에 의해

규정된 세법규정을 기능통화에 의한 한도액으로 환산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통화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여, 표시통화 재무제표²⁶⁾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현행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업이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도 표시통화에 의한 과세소득의 산출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현재 원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세무조정방법과 유사하므로 실무상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를 위해 표시통화로 환산된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외감법에 의해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하기 이전인 현행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법 개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법인세 신고시 원화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므로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1.5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법인세법은 거래가 실현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시점의 손익에 대해서는 이를 손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경우 세수의 불안정성이 초래되므로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에 대해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여 이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환율변동의 위험이 크므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의 인식이 오히려 재무제표를 왜곡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국

26) 외부공시목적으로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일정한 환산방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 때,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2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은 현행 국제회계기준의 외화환산회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가에 불리함을

25) 오윤택(2009) 참조

제회계기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세법의 원칙과 정책 목적에 따라 현행법을 유지하여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금융기관²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에 대하여는 외화평가손익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3].

그러나 재정부는 외화자산환산손익 인식 관련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화폐성 외화자산²⁹⁾의 환산손익의 인식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08년 개정이 이루어진지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이를 불인정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세법이 기업회계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수용 혹은 분리시의 효익과 비용의 크기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나, 외화환산 손익 인식과 관련한 본 저자의 생각은 세법이 기업회계를 수용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과연 법의 원칙 및 안정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1.6 리스분류

리스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준중의 원칙에 따라 기업회계를 수용하고 있다. 만약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도 법인세법이 기업회계준중의 원칙을 따른다면, 리스분류의 원칙만을 제시한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으로 인해 법률상 불확정 개념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이원화된 기업회계체제의 수용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도 불구하고

과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리스분류와 관련한 세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함께 이원화된 두 가지 기업회계 각각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개정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리스분류에 따른 기간손익의 차이는 미미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불확정 개념이 증가하며, 기업회계의 이원화로 동일한 실질에 대해 세부담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둘째, 기업회계를 수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리스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리스의 분류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지만, 세법상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 동일한 세부담을 이룬다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는 긍정적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보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법상 내용연수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는 여전히 기업에게 부담으로 남게 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매 회계기간 말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을 임의신고조정사항으로 보아 세법상 범위만큼 감가상각비로 손금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실질적으로 분리되는 효과가 있어 기업회계와 세법은 각자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 결산조정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방법은 단일 장부에 의해 과세소득을 유도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달러가 통화가 아닌 국가에서는 현행 외화환산회계가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할 계획에 있다.

28)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제7호).

29) 자산의 가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외화자산(현금, 매출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등).

로 현재계에 큰 변화없이 실행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의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기업이 이익조정 수단으로 감가상각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

세 번째는 감가상각을 결산조정사항으로 보는 현행 시스템을 폐지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이원화하는 방법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세부담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결산조정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세무회계가 독자적인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세법이 완결된 결산 및 계산구조를 갖출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세무회계와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복수장부 유지에 따른 불편이 있고,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법인세부담액의 기간 불일치 현상이 심각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이우택,1997; 이만우,1998).

1.8 대손충당금

국제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의 전환시 기준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적립액 중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과의 차액이 익금으로 환입되어 일시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결산조정사항으로 보는 현행 법인세를 유지하되, 일시환입액은 2년간 유예 후 익금산입하는 특례방안을 제시하였다.³⁰⁾ 그러나 유예제도는 일시적 세부담 증가에 대한 임시방

편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추정에 의한 충당금 설정을 법인세법이 얼마나 수용할지가 근본적인 문제라 하겠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거래처별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손충당금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추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세법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시 결산조정사항으로 분류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사항으로 보아 세법상 범위만큼 손금인정하는 방안이 주장되고 있다. 이 방법은 기업회계와 세법이 각자의 정책 목적에 맞는 충당금 적립법을 실행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 결산조정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은 거래처별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손충당금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업별로 한도율이 달라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둘째, 대손충당금에 대해 현행대로 결산조정사항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비용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유지로 조세당국의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으나, 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른 세부담을 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재정부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부산 등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여 2010년 6월 30일 재정부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8월중 실시된 설문을 통하여 총 5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모든 설문은 등간 5점 척도로 실시되었다.

30)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2년 후에 익금산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13년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발생손실'로 하지만, 2013년부터는 현행회계기준과 같은 '예상손실'로 변경해 대손충당금이 현행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2013년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정되면 대손충당금 규모가 다시 증가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익금불산입된 일시환입액이 상계될 것이라 예상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표 2. 설문응답자의 구성

경력	빈도	비율
5년 미만	9	17
5년~10년	15	28
11년~15년	14	26
15년~20년	10	19
11년~15년	4	8
20년 이상	1	2
합계	53	100(%)

설문은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 방안 중 8개 항목에 대해 각각 (1) 개정안의 타당성, (2) 기업 및 실무자들의 업무부담 경감 정도, (3) 최선의 개정안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위의 [표 2]는 설문응답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2.1 재정부 발표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0년 6월 30일 재정부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편 방향에 대한 세무사들의 의견을 검토하고자 발표된 개정안의 각 항목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산·부채의 평가와 자산유동화 분류 및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항목의 경우 평균값이 3.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들이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대체로 타당하다고 평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약매출 수익인식과 외화환산손익인식, 리스분류 및 대손충당금 항목의 경우 평균값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산·부채의 평가 항목의 평균값은 3.2로 현행과 같이 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1%가 이러한 법안에 대해 타당하다(4)고 답해 세무사의 과반수

표 3. 재정부 발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5%	중위수	75%	최대값
1. 자산부채의 평가	53	3.20	0.96	1	3	4	4	4
2. 자산유동화 분류	53	3.33	0.85	2	3	4	4	4
3. 예약매출 수익인식	53	2.81	0.89	1	2	2	4	4
4. 기능통화	53	3.00	1.03	1	2	3	4	4
5. 외화환산 손익인식	53	2.90	0.96	2	2	2	4	4
6. 리스분류	53	2.95	0.89	1	2	3	4	4
7. 유형자산 감가상각	53	3.53	0.66	2	3	4	4	4
8. 대손충당금	53	2.93	0.86	2	2	3	4	4

가 법인세법의 공정가치 평가 수용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최선의 개정안을 묻는 질문에서 기업입장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일치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중시스템에 의해 기업회계와 세무상 장부를 따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정가치 평가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감가상각 조정을 통해 조세부담의 임의조정을 방지하고 세법의 기본적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기 위해서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상당하였다.

자산유동화 분류 항목의 평균값은 3.33으로, 일률적으로 매각거래로 보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세무사들은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안 개정시 기업의 자의적 분류를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세무사들의 이러한 견해는 리스분류에 대한 응답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부는 리스분류로 인한 기간손익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세무사들은 이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평균값 2.95). 이는 리스분류에 관한 법개정시 실

무적 편의보다 조세형평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사들은 현행 법인세를 유지하여 건설진행률에 따라 예약매출의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평균값 2.81). 이 항목에 대한 최선의 개정안을 묻는 질문에서 예약매출 수익인식과 관련한 현행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규정이므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도 이를 수용하는 방향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기능통화와 관련한 응답에서는 평균값이 3.0으로 나타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무사들의 뚜렷한 견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별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통화를 도입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6%, 타당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4%로 나타나 세무사들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뚜렷한 견해를 나타내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세무사들은 국외 거래가 많은 현 시점에서 법인세법이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능통화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기업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법인세법에 기능통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기 보다는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일정한 환산과정을 거쳐 법인세 신고용 재무제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연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적절한 재무제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는 방향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평균값 2.90). 이 항목에 대한 최선의 개정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미실현 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법의 적용으로 세수의 안정성까지 해쳐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외화환산손익의 인식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손익금의 인식여부는 강제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편, 세무사들은 현행 결산조정체계를 유지한다는 감가상각 개정안에 대해서 8가지 개정 항목 중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평균값 3.53),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현행 결산조정체도를 폐지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의한 별도의 장부 유지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특히, 응답자의 90%가 보통이다(3) 혹은 타당하다(4)고 답해 대부분의 세무사가 개정안의 실행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의 원인으로, 단기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 방안을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2011년에 시행될 법인세법의 개정안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응답자들이 재정부의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함과 동시에 최선의 개정안으로 세법상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기술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세무사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회계와 세법의 분리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은 2011년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것으로, 많은 세무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이 얼마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기존체제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를 두는 재정부의 개정안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손충당금 규정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2.90으로 나타나 결산조정체도를 유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세무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더이상 국내회계기준이 적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10년간 분할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시환입액의 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가 심해지고 세법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견된 상황을 고려할 때,³¹⁾ 재정부는 대손충당금을 신고

31)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계

조정사항으로 분류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세무사의 경력이 길수록 세법의 개정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 보아 전체 설문응답자를 두 가지 표본으로 나누어 의견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개정안에 대해 경력이 10년 이상인 집단이 보다 타당하다고 평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세무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일관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재정부 발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경력별 결과

	경력 10년 미만 (n=24)			경력 10년 이상 (n=29)			평균차이 검증 t-test (p값)	중위수차 이검증 Z값 (p값)
	평균	중 위 수	순 위 합	평균	중 위 수	순 위 합		
1. 자산부채의 평가	3.25	3.5	648	3.17	4.0	783	0.29 (0.77)	-1.23 (0.90)
2. 자산유동화 분류	3.16	4.0	602	3.48	4.0	829	-1.35 (0.18)	-0.02 (0.98)
3. 예약매출 수익인식	2.80	3.0	618	2.89	2.0	812	0.77 (0.44)	0.23 (0.81)
4. 기능통화	2.91	3.0	610	3.06	4.0	810	-0.53 (0.59)	-1.06 (0.28)
5. 외화환산 손익인식	2.95	3.0	667	2.86	2.0	763	0.36 (0.72)	0.67 (0.50)
6. 리스분류	2.83	2.5	598	3.06	3.0	833	-0.95 (0.34)	-0.97 (0.32)
7. 유형자산 감가상각	3.50	4.0	628	3.55	4.0	803	-0.28 (0.78)	-0.53 (0.59)
8. 대손충당금	2.67	2.5	609	3.18	3.5	831	-2.12 (0.03)**	-1.78 (0.07)*

2.2 재정부 발표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업무경감 정도 설문조사결과

재정부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제정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다. 세법상 별도의 리스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각

각의 분류를 세법상 인정하는 것, 외화환산손익 인식에 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 기능통화 도입과 관련하여 원화·기능통화·표시통화 환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개정안은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업무부담이 어느정도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2 점대를 넘지 못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기업의 입장을 보다 고려한 개정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발표한 기능통화,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리스분류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2.39, 2.77 및 2.76의 낮은 점수를 응답해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 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규정(평균값 2.37)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능통화(평균값 2.39), 자산부채의 평가(평균값 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선행연구 및 기

표 5. 재정부 발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업무경감 정도 조사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5%	중위수	75%	최대값
1. 자산부채의 평가	53	2.52	0.74	2	2	2	3	4
2. 자산유동화 분류	53	2.77	0.91	2	2	2	4	4
3. 예약매출수익인식	53	2.69	0.77	2	2	3	4	4
4. 기능통화	53	2.39	0.96	1	1	2	3	4
5. 외화환산손익인식	53	2.77	0.80	2	2	3	3	4
6. 리스분류	53	2.76	0.80	2	2	3	3	4
7. 유형자산감가상각	53	2.37	0.62	2	2	2	3	4
8. 대손충당금	53	2.71	0.74	2	2	3	3	4

정과목으로 대손충당금(32%)을 지목해, 기획재정부의 개정안 발표에도 기업들의 세부담 우려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업무부담이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으로, 재정부의 개정안이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의 세부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회계 수용안이 실무적으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재 정부는 조세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의 다른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법안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안을 통한 업무경감의 기대가 경력별로 상이한지를 살펴본 결과, 일부 항목의 경우 집단별로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력이 10년 미만인 세무사 집단은 자산유동화 분류(t 값 = -3.66, $p < 0.01$), 예약매출 수익인식(Z 값 = -2.20, $p < 0.05$), 리스분류(t 값 = -1.60, $p < 0.10$) 및 유형자산 감가상각(t 값 = -2.45, $p < 0.01$) 항목에 대해 업무경감의 기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유동화 분류에 대해서는 경력이 10년 미만인 세무사들은 업무경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평균값 2.33), 경력이 10년 이상인

세무사들은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고 응답해(평균값 3.13) 각각 기대하는 바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산유동화 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는 경력과 관계없이 업무경감에 대한 기대치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업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체집단 대상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기업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을 개정할 수는 없겠으나,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실무상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기업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여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 중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 규정은 미실현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자산평가차액 및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산유동화 분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일괄적 매각거래로 보는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이원화된 기업회계를 모두 수용하는 정책에 대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해 이들 두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의적 분류방지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매출 수익인식 규정은 기업회계를 수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기능통화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표 6. 재정부 발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업무경감 정도 조사 : 경력별 결과

	경력 10년 미만 (n=24)			경력 10년 이상 (n=29)			평균 차이검증	중위수 차이검증
	평균	중 위 수	순 위 합	평균	중 위 수	순 위 합		
1. 자산부채의 평가	2.66	2.5	718	2.41	2.0	713	1.23 (0.12)	1.65 (0.09)*
2. 자산유동화 분류	2.33	2.0	492	3.13	4.0	939	-3.66 (0.00)***	-2.67 (0.00)**
3. 예약매출 수익인식	2.58	2.0	577	2.79	3.0	854	-0.96 (0.33)	-2.20 (0.02)**
4. 기능통화	2.41	2.5	660	2.37	2.0	771	0.14 (0.89)	0.99 (0.31)
5. 외화환산 손익인식	2.83	3.0	674	2.72	3.0	757	0.49 (0.64)	0.48 (0.62)
6. 리스분류	2.58	3.0	563	2.93	3.0	868	-1.60 (0.09)*	-1.71 (0.08)*
7. 유형자산 감가상각	2.16	2.0	554	2.55	2.0	877	-2.45 (0.01)**	-1.93 (0.05)**
8. 대손충당금	2.66	3.0	637	2.75	3.0	794	-0.44 (0.65)	-0.25 (0.79)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현행 결산 조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동시에 최선의 개정안으로는 세법상 장부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라 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은 재정부의 개정안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손충당금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유예규정을 두는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개정 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실무적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외화환산손익 및 리스분류에 있어서도 기업의 업무경감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났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모든 세법을 기업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개정할 수는 없겠으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실무상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기업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가상각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결산조정제도로 인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선의 개정안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분리하는 것이라 응답하였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분리 문제는 각 방안에 대한 비용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나,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국제회계기준의 끊임없는 개정에 대응하여 세법의 계속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11년 법인세법 개정시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분리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상에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응답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³²⁾ 세무사들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설문회수율이 낮은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세무사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계개편

을 앞두고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재정부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의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기획재정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기획재정부 공청회자료, 2010.
- [2] 김경호, 정영기, 이영한, 김경태,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검토와 영향 분석”, 한국회계기준원 연구보고서, 2007.
- [3] 김문철, 이준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pp.155-185, 2008.
- [4] 박정우, 손상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2권, 제1호, pp.53-91, 2001.
- [5] 박재환, 정도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시스템의 변화”,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pp.293-314, 2009.
- [6] 삼정회계법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과 주요 이슈”,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7.
- [7] 심태섭,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
- [8] 오윤택,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에 따른 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9] 이영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2권, 제3호, pp.189-228, 2007.

32) 전국의 세무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53명만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35%에 그쳤다.

- [10] 전홍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과제”, 상장협 연구, 제54집, pp.3-21, 2006.
- [11]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연구위원회, 국제회계기준 도입 세계개선연구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유의사항 및 세계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08.
- [12] 한국회계기준원,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의 차이와 영향분석”, 2007.
- [13]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2007.
- [14] IASB, IFRS, 2006.

저 자 소 개

장 지 경(Ji-Kyung Jang)

정회원



- 2004년 9월 ~ 현재 : 세무사
- 2010년 8월 : 부산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 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관심분야> : Police & Law